

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8. 10. 14

제안자 : 민경환 의원외

□ 수정 이유

- 제정되는 조례안 중 조문의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하기 위함.

□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6조제3항 중

제1호의 '임명하는 자'를 '임명하는 자 1명',

제2호의 '풍부한 자'를 '풍부한 자 5명'

제3호의 '추천하는 자'를 '추천하는 자 3명'

제4호의 '추천하는 자'를 '추천하는 자 3명'

제5호의 '추천하는 자'를 '추천하는 자 2명'

제6호의 '추천하는 자'를 '추천하는 자 2명'

제7호의 '추천하는 자'를 '추천하는 자 2명'

제8호의 '추천하는 자'를 '추천하는 자 2명' 으로 각각 수정.

- 안 제6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'④ 제3항에서 규정한 자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'

- 안 제13조제1항의 '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'를 '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'로 수정.

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안 제6조제3항 중

제1호의 '임명하는 자'를 '임명하는 자 1명',

제2호의 '풍부한 자'를 '풍부한 자 5명'

제3호의 '추천하는 자'를 '추천하는 자 3명'

제4호의 '추천하는 자'를 '추천하는 자 3명'

제5호의 '추천하는 자'를 '추천하는 자 2명'

제6호의 '추천하는 자'를 '추천하는 자 2명'

제7호의 '추천하는 자'를 '추천하는 자 2명'

제8호의 '추천하는 자'를 '추천하는 자 2명' 으로 각각 수정.

○ 안 제6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'④ 제3항에서 규정한 자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'

○ 안 제13조제1항의 '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'를 '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'로 수정.

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</p> <p>제6조(구성)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등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<u>임명하는 자</u></p> <p>2. 도시계획, 산업입지, 건축, 교통,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써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<u>풍부한 자</u></p> <p>3.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, 설계전문가, 환경전문가 각 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<u>추천하는 자</u></p> <p>4. 「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」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심의위원회(2009년 1월 1일부터는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<u>추천하는 자</u></p>	<p>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</p> <p>제6조(구성) ③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<u>임명하는 자 1명</u></p> <p>2. <u>풍부한 자 5명</u></p> <p>3. <u>추천하는 자 3명</u></p> <p>4. <u>추천하는 자 3명</u></p>

